

 금융감독원	보도자료		금융은 투투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보도	2024.4.17.(수) 조간	배포	2024.4.16.(화)
담당부서	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공정금융팀	책임자 담당자	국장 이길성 (02-3145-5700) 팀장 이승 (02-3145-5689)

**대출받은 후 14일 이내 취소하고 싶다면
대출 청약철회권을 적극 활용하세요 [금융꿀팁 152]**

- 주요 내용 -

-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 정보를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습니다.
- 그간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문의·민원 등이 지속되어 주요 은행 대출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,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
 - 금융소비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청약철회의 행사기한, 행사방법, 효과 및 대출 중도상환과의 차이점을 안내해 드립니다.
 - 금융회사의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안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「공정금융 추진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개선토록 지도하겠습니다.

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유의사항

- ✓ 청약철회의 행사기한·행사방법·효과 등은 「금소법」상 설명의무 대상이므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세요!
- ✓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비용과 개인신용평가 측면에서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차이를 꼼꼼히 비교하세요!
【대출 청약철회】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 반환 시 대출 취소 가능, 대출 기록 삭제
【대출 중도상환】 중도상환수수료 납부 시 대출 조기상환 가능, 대출 기록 유지

1 대출 청약철회권 안내

- **(정의)** 「금소법」(§46)상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(청약철회권)를 보유합니다.
 - 이는 금융상품 청약 이후 계약의 필요성, 조건 등을 재고*하여 불이익 없이 무효화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.

* (예) 대출 받은 이후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, 타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등
- **(행사기한)**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
 -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,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(즉, 대출받은 날)로부터 14일입니다*.
 - *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
- ※ 참고 (보장성 상품)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,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(투자성 상품(자문 포함))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내
- **(행사방법)**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*를 하고, ①원금, ②이자, ③부대비용**을 반환하여야 합니다. (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 가능)
 - * 서면, 이메일, 유선 등 의사표시 방법의 제한은 없으며, 영업점 방문 필요시 별도 안내
 - **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,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등 (시행령§37⑥)
 - 특히,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- **(효과)**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, ‘대출을 받았다’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.

※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,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. 또한,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*하며,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습니다.

* 금융회사별, 상품별 차등 운영(예: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, 일부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)

(참고)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예시

- ◆ 김 씨는 '24년 4월 15일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대출금을 입금받았습니다. 대출금 1억원, 대출금리 5%, 만기 2년이고, 부대비용으로 금융소비자 부담분 인지세 35천원을 납부했습니다. 김 씨는 며칠간 대출 필요성에 대해 고민한 결과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4월 20일, 대출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. 김 씨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
- ① **(행사기한)** 김 씨는 금전을 받은 날부터 **14일 이내***인 4월 29일까지 **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**
- * 금전 등을 지급받은 날의 **익일부터 14일**이며,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행사 가능
- ② **(행사방법)** 김 씨는 4월 22일 A은행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, **대출원금과 이자(원리금)**, 그리고 은행이 별도 부담한 인지세 35천원을 **반환**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, 안내받은 **반환금액을 입금**하였습니다.
- ③ **(효과)** 반환 후 김 씨는 **청약철회가 완료**되었다는 알림을 받았고, 대출 계약이 철회됨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**대출 이력도 삭제**되었습니다.

2 대출 청약철회권 이용 현황

- **(연도별 추이)** '21~'23년 주요 은행(4개 시중은행 및 1개 인터넷은행) 대출 이용자의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,
- 「금소법」 시행 이후 청약철회 비중*이 지속적으로 증가**하여 '23년에는 68.6%에 이르렀으나, 여전히 그 비중이 낮은 상황입니다.
- * (14일 이내 청약철회 건수) / (14일 이내 청약철회 건수 + 14일 이내 중도상환 건수)
** ('21년) 22.3% → ('22년) 55.4% → ('23년) 68.6%
- 또한, 은행별 업무처리 절차 또는 안내 방식 등이 달라 은행 간 청약철회 비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- **(연령별 특성)** 20~30대의 청약철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약철회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하여, 금융취약계층인 고령자일수록 대출 청약철회권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연령대별 14일 이내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비중('23년)

(단위: %)

21세 미만	21세~30세	31세~40세	41세~50세	51세~60세	61세~70세	71세~80세	80세 초과
84.6	79.3	65.2	58.1	44.6	36.4	39.2	34.1

3 대출 청약철회권 관련 유의사항

①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.

-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,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비용 외에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되며(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< 중도상환수수료)
- 청약철회 시에는 금융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나,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.

②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.

-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*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,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* 예금담보대출(5천만원 초과 시 인지세 부과), 금융회사 정책상 한시적 면제 등 5쪽 [사례2] 참고

③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

-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,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*도 있습니다.
* (예)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되어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,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곤란

④ 인터넷뱅킹, 앱의 안내가 미흡한 경우, 유선 등으로 설명을 요구하세요.

-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청약철회 관련(「금소법」상 설명의무)하여 충분히 설명해야 하므로, 금융소비자는 언제든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 관련 안내를 강화도록 지도하겠습니다.

-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중도상환을 요구하는 시점에 금융회사가 의사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금융회사의 안내 방식, 절차 등의 개선*을 지도하겠습니다.

* 청약철회의 효과를 비용 부담, 대출이력 삭제 여부 등의 측면에서 중도상환과 비교 안내

(참고) 14일 이내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(대출원리금은 양 방식 동일하므로 제외)

[사례 1]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 (대출 이용 기간 8일)

(대출종류·금액) 신용대출 1억원	(대출금리) 5%	(만기) 2년
(부대비용) 인지세 35,000원 납부(은행은 35,000원 별도 납부)		

구분		청약철회	중도상환	비교
비용	중도상환수수료*	-	593,425원	대출 잔존기간에 대해 발생
	반환 부대비용	35,000원	-	인지세 은행 부담분 반환
	총 비용	35,000원	593,425원	청약철회권 행사가 유리
신용평가	대출기록	삭제	미삭제	

* 중도상환수수료 = 대출금액 × 중도상환수수료율 × 대출 잔존기간 / 만기일수
= 1억원 × 0.6%(수수료율 가정) × (722일 / 730일) = 593,425원

⇒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유리

[사례 2-1]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

(대출종류·금액) 예금담보대출 7천만원	(대출금리) 5%	(만기) 1년
(부대비용) 인지세 35,000원 납부(은행은 35,000원 별도 납부)		

구분		청약철회	중도상환	비교
비용	중도상환수수료	-	없음	-
	반환 부대비용	35,000원	-	인지세 은행 부담분 반환
	총 비용	35,000원	없음	중도상환이 유리
신용평가	대출기록	삭제	미삭제	

⇒ 비용 측면에서 대출 중도상환이 유리 (단,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대출이력이 삭제되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,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)

[사례 2-2]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

(대출종류·금액) 주택담보대출 2억원	(대출금리) 5%	(만기) 30년
(부대비용) 인지세 75,000원 납부(은행은 인지세, 근저당 설정비용 등 935,000원 납부)		

구분		청약철회	중도상환	비교
비용	중도상환수수료	-	없음	-
	반환 부대비용	935,000원*	-	인지세·근저당 설정비용 등 은행 부담분 반환
	총 비용	935,000원	없음	중도상환이 유리
신용평가	대출기록	삭제	미삭제	

* 인지세 7.5만원, 등록세·교육세 57.6만원 (대출금의 120%×0.2%×1.2), 근저당설정 수수료 28.4만원(19.4만원+1억원 초과액의 0.09%) 등 총 93.5만원

⇒ 비용 측면에서 대출 중도상환이 유리 (단,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대출이력이 삭제되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일반적으로 유리하나, 차주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)

- 금융회사에 대해 대출성 상품 가입 단계*에서 업무방법서 및 앱 안내문구 등을 개정하여 청약철회권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

* '청약철회의 기한·행사방법·효과에 관한 사항'은 「금소법」 제19조에 따른 설명의무 대상임

- 금융소비자가 14일 내 대출 청약철회나 중도상환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그 차이(예: 비용 측면, 대출기록 삭제 여부)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.
 - 이를 위해 차기 「공정금융 추진위원회」의 심의를 거쳐 금융회사의 청약철회권 안내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-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고,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